

인천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2573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2. B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C(D생) 사이에 2020. 6.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나.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6. 1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2. 접수 제2867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2. 접수 제2867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C에게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5.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나. C은 2020. 6. 13. E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9. 24. E은행에게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5617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1. “C은 원고에게 4,964,312원 및 그 중 4,964,287원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0. 12. 29.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20.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27,551,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B과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20. 6. 22.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미 C이 E은행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던 사실, 약 3개월 후에 원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226,982,1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3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기도 연천군 F 전 865㎡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는 채무자 주식회사 G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위 주식회사 H의 피담보채권액이 103,203,233원임에 반하여 위 토지의 공시가액은 49,478,000원으로 위 토지는 사실상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볼 적극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구상금채권 103,203,233원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위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C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I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23,211,206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C은 피고 B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 B은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회사의 위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별지